

제6장 신용장에 의한 국제결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잘 알 수 없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중간에 개입시키는 신용장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에 의한 무역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無信用狀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상업신용장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은행(opening bank: issuing bank)이 고객(applicant)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가 지정한 수익자(beneficiary)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undertaking)하는 서면을 말한다. 채권자(수익자)가 채권을 행사할 때 신용장 거래은행에 신용장과 貨換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기타 신용장에서 정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그만큼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간편하고 확실해지는 것이다.

신용장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代金の 청구와 지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설은행 외에도 다수의 銀行이 관여하게 된다. 通知은행(advising bank)은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의 내도를 통지하는 은행이고, 買入은행(negotiating bank)은 開設은행을 대신하여 신용장 및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이며, 決済은행(settling bank)은 개설은행의 指示에 따라 대금을 매입은행에 지급하는 은행이다. 確認은행(confirming bank)은 신용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은행의 지급약속을 확인하는 은행이다.

1.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은 L/C 개설 의뢰인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商業신용장(commercial L/C)과 保證신용장(stand-by L/C)으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서류와 환어음과 함께 이를 은행에 매각(이를 흔히 “네고”한다고 함)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만일 수입상이 당해 상품을 반드시 제 날짜에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수출상에 대하여 소정 기일 내에 컴퓨터를 선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保證신용장을 받아 놓으면 된다. 그러므로 보증신용장은 상품거래와는 관계없이 마치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처럼 이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B사의 요청에 의하여 X은행이 보증신용장을 발행하였다면 B사의 거래상대방이 B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X은행 앞으로 신용장을 제시하였을 때 X은행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요컨대 商業신용장의 경우 수출상이 물품의 선적을 마친 후 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保證신용장에 있어서는 L/C 수익자가 상대방(L/C 개설의뢰인)이 계약상의 일정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certificates)를 은행에 제출하면 발행은행은 채무불이행(default, non-performance)이 있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한다.

保證신용장은 그 文言이 보증서와 매우 흡사하지만 信用狀이므로 신용장 통일규칙(UCP)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신용장 금액을 청구하려면 그에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증서는 지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보증서 발급은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다른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미국 은행들은 은행법(National Bank Act)상 보증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判例가 이를 권한외(ultra vires)의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No Guarantee Rule) 그 대신 보증신용장을 발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밖에 信用狀 통일규칙에서는 L/C 발행은행이 임의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取消可能 신용장(revocable L/C)과 수익자(確認신용장인 경우에는 확인은행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지 않고서는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取消不能 신용장(irrevocable L/C)을 구분하고 있다. 前者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상)의 신용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으나 수출상으로서는 그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므로 실무상 사용되는 신용장은 취소불능 신용장이 대부분이다.

2. 信用狀에 관한 法規

가. 信用狀 統一規則

신용장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일명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UCP)라는 말 그대로 法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거래관습 및 관행’을 의미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993년 개정판(ICC Publication No.500)이 가장 최신의 것이다. 이것은 국제무역의 새로운 운송형태와 SWIFT 등 전자통신,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1983년에 개정(ICC Publication No.400)한 것을 다시 10년만에 다섯 번째로 개정한 것이다.

나. UCP와 UCC

미국의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5편에서도 信用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UCC Article 5는 1995년에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UCC를 따르기로 합의하거나 法廷地인 미국 법원이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국제무역거래가 빈번히 행해지는 뉴욕주의 상법(뉴욕 주의회가 UCC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뉴욕주의 법률로서 채택한 것)은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신용장 거래에 대하여는 UCC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뉴욕주 UCC §5-102(4))고 규정하고 있다. 反對해석을 하면 미국(뉴욕)에서는 비록 법적 효력이 없는 거래관행에 불과하지만 당사자가 신용장 통일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이상 신용장 통일규칙이 實定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바로 여기서 어디에도 뚜렷이 속하지 않은 이른바 灰色지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로 신용장 사기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한 가장 근접한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UCP 제13조 (書類審査 기준)

a.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UCP에 반영된 국제 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는 심사하지 않는다. 은행이 그러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 그것을 제출한 자에게 반려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첩시킨다.

새로 개정된 UCP에서는 서류를 심사할 때 UCP에 반영된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은행관행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관하여는 아직 정립된 바 없다. 많은 경우에 국제 무역금융을 주도하고 UCC의 적용을 받고 있는 美國 은행의 업무처리관행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만일 미국 뉴욕주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UCC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규정이 없으면 뉴욕주의 커먼로(判例法)를 따라야 하는데 UCC는 이러한 판례법을 조문화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UCC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신용장 서류의 詐欺사건에 있어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들로서는 UCC에 의존하는 외에는 합리적인 代案이 없을 것 같다. UCC는 UCP에 비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뉴욕주 이외의 지역에서 UCC 규정이 설득력은 있지만(persuasive)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본다(not controlling).

개정 UCC 제5-109조 (사기 및 위조)¹⁾

(a)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으로 엄밀히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제시가 있었지만 요구되는 문서가 위조되었든가, 실질적으로 사기적이든가 또는 제시한 것을 지급하였을 때 당해 발행인 또는 신청인에 대하여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것이 될 경우

(1) 발행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지급을 요구하였을 때 그 제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i) 선의로(in good faith),²⁾ 위조 또는 실질적 사기에 대한 통지 없이 대가를 지급한 지정인
- (ii) 선의로 신용장을 확인하고 지급한 사람
- (iii) 발행인 또는 지정인에 의하여 인수된 후에 취득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선의취득자
- (iv) 발행인 또는 지정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후 위조 또는 실질적 사기에 대한 통지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연지급채무를 인수한 사람

(2) 선의의 발행인은 다른 경우에는 신용장의 제시에 대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b) 신청인이 요구되는 문서가 위조되었든가 실질적으로 사기적이든가, 또는 제시한 것을 지급하였을 때 당해 발행인 또는 신청인에 대하여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행인이 신용장의 제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든가 발행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와 유사한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 (1) 당해 구제가 인수된 환어음 또는 발행인이 부담한 연지급채무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때
- (2)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 발행인 또는 지정인이 당해 구제가 허용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때
- (3) 주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1) 종전 UCC 제5-114조에 해당한다.

2) 여기서 善意란 상대방을 해할 의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 (4) 법원에 제출된 정보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조 또는 실질적 사기에 관한 청구에 승소할 가능성이 많고,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이 (a)항 (1)호에 의한 자격이 없을 때

3. 信用狀의 법률관계

가. 三面 契約관계

상업신용장의 거래시 물품 공급자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환어음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미국의 判例理論에 의하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① 개설의뢰인과 은행: 고객이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대금 지급을 위탁하는 계약

② 개설의뢰인(수입상)과 수익자(수출상): 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상이 명시한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신용장에 기한 지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③ 은행과 수익자: 수익자가 신용장에 기하여 화환어음과 소정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환어음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주된 債務者이며 개설의뢰인의 保證人이 아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은행은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스스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UCP §2).

나. 신용장의 獨立抽象性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을 갖는다. 신용장 거래는 물품 매매계약과 같은 신용장 발행의 기초가 되는 原因契約(underlying contract)하고는 독립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매매 당사자간의 다툼에 끼어들 필요 없이 신용장 文言만으로 판단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서 원인계약에 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며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3a) 하고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3b)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4. 信用狀條件의 嚴格一致 여부

가. 엄격한 一致條件

銀行이 신용장을 취급함에 있어 종종 문제되는 것은 개설의뢰인이 지정한 신용장 조건과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B社의 요청으로 X은행이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였는데, B사의 거래상대방이 X은행에 신용장 금액지급을 요구해 왔다. X은행의 신용장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제출서류의 文面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신용장 조건에 의하면 “A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hereby certify)한다”고 해야 할 것을 “A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hereby certify that I have determined that ……)한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신용장거래에 관하여 UCP를 따르기로 했을 때 X은행은 청구에 따른 지급을 해야 하는가?

본래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로부터 그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원인이 된 거래와는 관계없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흔히 개설은행의 의무는 ‘신용장의 4각 문서 안에’(within the four corners of the letter)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을 처리해야 하는 은행 담당자가 일일이 서류의 일치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면 이는 신용장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제출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히 일치(substantial compliance)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엄격히 일치(strict compliance)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미국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융통성을 발휘한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다.

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엄격성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해 부당한 지급거절을 항의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때 법원은 은행편에 서서 제출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상당한 一致條件

반대로 개설의뢰인이 은행에 부당한 지급을 항의할 때에는 “엄격히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소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오도될 염려가 없는 한 업무처리의 융통성을 위해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례도 나와 있다.

미국 법원은 신용장조건의 엄격일치를 선언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서류, 화물검사증 등 서류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수익자에게 사기성이 없고 개설은행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타이핑 미스는 문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장 조건이 애매할 경우에는 그 작성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지 않는 예가 많다.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없는 상품 규격을 서류에 기재한 것은 하자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에도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불일치가 있음에도 지급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한다. 은행의 신용장 담당자는 우선 신용장에서 무슨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용장조건이 애매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맞게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위조 또는 사기가 있을 때 개설은행이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사례연구

동남인터내쇼날 북한 시멘트 사건

대판 1993.12.24 93다15632

동남인터내쇼날社(“동남”)는 1990년 6월 16일 中國의 오금공사와 北韓産 시멘트 2만톤의 수

입계약을 체결하고 K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이에 K은행은 10월 6일 오금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貨換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는 K은행의 指示式으로 발행된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 2통 등 일정한 서류를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운송서류의 발행일자로부터 15일 이내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ICC 신용장 통일규칙(UCP)을 따르기로 하였다.

통지은행인 중국은행은 10월 8일 오금공사에 신용장 개설을 통지하였으나 오금공사가 화물을 선적할 배를 구하기 어렵다며 선적만료일의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동남은 10월 13일 선적만료일은 1990년 11월 15일, 신용장 유효기간은 11월 30일로 각각 변경하였다. 그후 오금공사는 그 계열사인 동방무역공사에 수정된 신용장을 양도하고, 동방무역공사는 어렵사리 홍콩 소재 토호 해운의 선박을 용선하여 1990년 11월 15일에야 비로소 남포항에서 시멘트 선적을 시작, 11월 24일 선적을 마친 후 11월 27일 부산항에 화물을 도착시킬 수 있었다.

그 사이 동남은 동방무역공사에 대해 시멘트 수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토호 해운에 대해서는 날짜를 소급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텔렉스를 타전하는 한편 K은행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신용장 대금의 결제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동방무역공사는 11월 23일 동남에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소급하여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텔렉스를 일방적으로 보낸 후 11월 24일 토호 해운으로부터 1990년 11월 15일자로 시멘트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취 선하증권 2통을 발급 받은 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선하증권에 “AS AGENT”라 표시하고 “ON BOARD 15/NOV/199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동남은 11월 26일 동방무역공사에 대하여 재차 시멘트 인수를 거절한다는 텔렉스를 보내는 한편 K은행에 대하여 동방무역공사의 11월 23일자 텔렉스를 제시하면서 결제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지급정지 지시를 요청하였다. 동남은 11월 27일 북한산 시멘트가 부산항에 도착하자 K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거듭 신용장 대금의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11월 30일 토호 해운에서 보내 온 선하증권 사본을 입수한 후에는 12월 1일 K은행에 직접 찾아가 이들 수취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중국의 매입은행으로부터 본선 적재일자가 1990년 11월 15일 이전으로 소급 기재된 선적 선하증권이 송부되어 오더라도 이는 위조된 것이 명백하므로 그 인수를 거절하고 대금지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중국은행은 1990년 11월 28일 동방무역공사로부터 선하증권 2통, K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비롯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매입한 다음 12월 1일 결제은행인 미국의 B은행에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B은행은 12월 4일 K은행 계정에서 중국은행 계정으로 59만달러를 이체하여 신용장 결제를 끝마쳤다. K은행은 12월 4일 중국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일체를 송부받고 동남이 말한 대로 선하증권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결제은행인 B은행에 이 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B은행이 신용장 대금 결제를 마친 후 이 사실을 알리는 텔렉스를 K은행에 보내 왔으나 담당직원은 이를 간과한 채 중국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가 위조되었다 하여 12월 10일 중국은행 앞으로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텔렉스를 보냈다. 중국은행은 이를 묵살할 것이 분명한 바 K은행은 동남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가. 大法院 判決의 요지

본 건 大法院 판결(대판 1993.12.24 93다15632)은 사안이 신용장에 관한 전형적인 사건 유형인 데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거래에 속하기에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서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나(UCP §13 舊 §17)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K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선적서류 심사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K은행이 수령한 선하증권에는 그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本船적재의 표시에 대하여 UCP 제23조(舊 §27b)에서 요구하는 운송인인 토호 해운이나 그 대리인의 정식 또는 약식서명이 없으므로 그 문면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K은행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K은행은 선하증권을 송부받기 전에 동남으로부터 동방무역공사 및 토호 해운과 동남간에 주고받은 텔렉스, 위조되기 전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시받아 그 선하증권이 위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셋째, 1990년 12월 4일 중국의 매입 은행인 중국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일체를 송부받아 위조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즉시 결제은행인 미국의 B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요컨대, 법원은 “K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한 이상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K은행측은 UCP에 반영된 국제 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비추어 매입은행인 중국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할 당시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므로 개설은행으로서 당연히 그 매입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또 결제은행인 B은행이 중국은행의 신용장 대금 상환청구에 따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것은 K은행과 B은행간의 포괄적 자금결제(償還) 수권계약에 기하여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므로 K은행의 선적서류 심사의무 이행과는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UCP 제13조(舊 §16)에 의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등을 송부받은 후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매입은행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한 후 이미 상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상환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중국은행이 선적서류의 매입 시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의 여부는 K은행이 송부되어 온 선적서류의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B은행의 신용장 대금 결제는 K은행과 B은행의 내부적인 신용장 대금 결제의 수권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K은행이 선적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나. 미국 UCC의 경우

만일 이 사건이 미국 뉴욕 법정에서 다투어졌다면 어떠하였을지 알아보자.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국제 표준은행관행에 따라 결정토록 한 UCP 제13조(서류심사의 기준)의 규정만으로는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므로 UCC 제5-109조를 적용하였을 것이다. UCC는 “신용장 관련서류가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 원칙적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을 규정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었다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특약사항을 확인한 후 이에 따르면 될 것이다. 둘째, 관련서류가 위조되었거나(forged) 사기적인(fraudulent) 경우에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정당한 권한 없이 서류를 작성하거나(偽造) 진정하게 만들어진 서류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變造)은 물론 그 의미를 확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虛偽表示)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셋째, 거래상의 사기(fraud in the transaction)는 사기적인 서류와는 달리, 양모를 수입하기로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선적된 화물은 쓰레기였고 개설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같이 수익자의 사기가 개재된 경우에는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³⁾를 입법화한 것이다. 그밖에 UCC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신용장의 독립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매입은행 또는 다른 어음 소지인이 선의취득자로서 환어음을 수취한 경우에는 어음금(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UCC의 규정은 미국의 판례법을 조문화한 것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신용장은 그 원인이 된 거래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신용장 거래원칙을 존중하고 사기의 항변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Fraud Rule」이 적용될 때에는 형평법(equity) 상의 支給禁止 명령(injunction) 제도를 원용하여 법원에 개설은행의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 信用狀 詐欺의 요건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나라에 미국 UCC 제5-114조와 같은 법규정이 없음에도 신용장의 獨立抽象性에 대한 예외 기준을 명확히 적시한 좋은 선례라 여겨진다.

우선 신용장 개설은행은 UCP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류 문면 자체의 하자란 거래관행상 또는 당사자가 예정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선적서류가 偽造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함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권한없이 선적서류를 偽作하거나 變造한 것을 은행 담당자가 직접 발견하였거나 의뢰인의 통보를 받고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서류가 위작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고, 신용장을 취급하는 담당자로서 그러한 의심에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미국 UCC에 규정된 거래상의 詐欺는 물론이고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문서의 위조에 이를 정도로 중하게 드러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

이 사건에서 신용장 거래를 취급하는 K은행은 일처리가 매우 서툴렀다. 판결이유에서 지적

3) *Sztejn v. Schroder Banking Corp.* 177 Misc.719, 31 NYS 2d 631 (NY Sup. Ct. 1941)

4) 예를 들어 신용장개설 의뢰인이 그릇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대금지급을 피하는 것, 또는 수익자가 선적서류 등에 실제 선적한 화물과는 다른 표시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약위반의 정도가 문서위조에 이르지 않고 단지 의뢰인이 물량 부족, 품질 미달, 선적기일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서류가 신용장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이상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 대로 신용장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선적서류가 위조될 것이라는 점을 통고받은 이상 매입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받고 이를 조사·확인하여 결제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가 끝났다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간과한 채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한 지 6일이 지난 후에야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텔렉스를 보냈으니 능력처리임을 면할 수 없었다. UCP에서는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7 은행영업일까지 유예(UCP §14d)를 주고 있지만 본건과 같이 전후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모든 통지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했다.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에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선적재 선하증권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정식 또는 약식 서명이 없는 것 즉 위조의 흔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청구 담당자로서 커다란 불찰이었다.

스테인 케이스(*Sztejn v. J. Henry Schroder Banking Corp*)

31 N.Y.S. 2d 631 (1941)

[사실관계]

원고는 1941년 1월 7일 공동피고인 인도 소재 트랜지무역회사(Transea Traders, Ltd.)와 剛毛(bristle)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 받아 트랜지 무역회사에 송부했는데 同社가 강모를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제시해오면 피고은행이 환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트랜지 무역회사는 거래은행인 차타드 은행을 통하여 네고를 하고 피고은행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트랜지 무역회사가 보낸 물품은 강모가 아닌 쓰레기(rubbish)를 채운 나무상자로 트랜지 회사가 사기를 친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어음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선적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적서류에 표시된 물품과 실제로 운송된 물품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환어음의 지급을 금지할 것을 청구한 것이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Shientag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용장거래가 그 원인관계가 되는 물품판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것이라 함은 확립된 판례이며, 신용장개설은행은 선적서류 등이 제출되면 어음금을 지급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이는 무역거래의 금융 편의를 위한 신용장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신용장거래의 제일 목적은 매도인에게 신속히 물품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으로 하여금 매수인의 요청에 이끌려 단순한 서류심사를 넘어서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거래된 물품의 품질을 둘러싸고 야기된 분쟁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시킬 의도가 있다면 신용장 자체에 이를 규정하면 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형식을 갖춰 제시된 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을 지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어음에 첨부된 서류는 진정한 것이고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단순히 일반적인 품질보증에 관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매도인에 의해서 사술이 자행된 사실이 대금결제 이전에 은행에 알려진 경우에는 신용장거래에서의 개설은행의 의무의 독립성 원칙은 파렴치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신용장개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매수인의

신용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거래물품이 가지는 가치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 . . 물론 은행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약이행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서류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물품이 현실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함에는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본건에서 차타드은행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아니라 사술을 쓴 매도인을 위하여 추심의뢰를 받은 자에 불과하다. 만일 지급 청구하는 은행이 일반거래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자였더라면 비록 기본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사술에 의해서 얼룩진 경우라 하더라도 어음금 지급청구는 배척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피고은행은 그가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기 이전에 매도인의 사기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던 것이다.”